

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. 1. 9

나. 제 출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1. 9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8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1. 1. 17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박명호)

가. 제안이유

- 73년 조례제정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
- 인증기와 관련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의 투명성 확보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책임공무원 임명(안 제4조의2제4항)
-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입증지의 종류·규격 및 색채 지정(안 제4조의3)
-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관한 규정(안 제4조의4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수입증지가 직장새마을금고와 계약되어 있습니까?	○ 금번 구청장, 동장을 삭제하고 시장으로 합니다.
○ 인증기가 있는데 수입증지를 별도로 사용합니까?	○ 인증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며 현장민원실에서도 사용됩니다.
○ 동사무소는 인증기가 있으므로 수입증지가 필요치 않을텐데?	○ 수입증지를 소유는 하고 있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견

6. 수정안요지

○ 별 침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429호
의결년월일	2001. 1. 19 (제84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1. 19

제 출 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안 제20조제2항에서 “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의한 일일민원 처리 내역에 의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, 결산자료는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20조제2항의 후단의 “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”라는 조항은 중복이므로 삭제함이 타당

2. 주요골자

○ 안 제20조제2항의 후단의 “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”를 삭제

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0조제2항의 후단의 “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”를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0조(계기사용의 수입금의 정산) ①(생략)	제20조(수입금의 정산) ①(생략)	제20조(수입금의 정산) ①(생략)
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10호 서식	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 수입금은 일일전표와 별지 제	②.....

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.	10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관리대장 및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의한 일일민원처리내역에 의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, 결산자료는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무인발급기 관리에 관한 제규정에 따라 수시결산할 수 있다. <u>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</u>	 (삭제)
--	---	--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수입증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1항 중 “제24조”를 “제3조제1항”으로 하고,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제3항에 의한 계기관리 책임자는 계기관리부서 소속공무원으로 하며, 소속부서장의 업무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수입증지요금계기로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·규격 및 색채) 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증지의 종류는 10원권, 50원권, 100원권, 300원권, 400원권, 500원권, 600원권, 700원권, 800원권, 1,000원권, 2,000원권, 3,000원권, 4,000원권, 5,000원권, 10,000원권, 50,000원권, 100,000원권의 17종으로 한다.

②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증지 규격과 색채는 제1항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규격 : 가로 2.7센티미터, 세로 3.0센티미터

2. 색채 : 연녹색

제4조의4(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) ①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(이하 “무인발급기”라 한다.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②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증명서는 제5조에 의한 도안을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0원권, 40원권, 50원권, 60원권”을 “10원권, 50원권, 100원권”으로 하고, “500원권, 700원권”을 “500원권, 600원권, 700원권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시장, 구청장, 동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부천시 본청에 대한 판매인 계약은 시장에게, 기타의 판매인 계약은 구청장, 동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 중 “시장, 구청장, 동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며,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의 본문 중 “시장, 구청장, 동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시장, 구청장, 동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”을 “수입금의 정산”으로 하고, 동조제1항 중 “제4조의2의”를 “제4조의2 및 제4조의4의”로 하며, 동조동항의 “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,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만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”를 “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“계기의”를 “계기 및 무인발급기의”로 하고 “복사침부”를 “침부”로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수입금은 일일전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관리대장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일일민원처리내역에 의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, 결산자료는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무인발급기 관리에 관한 제규정에 따라 수시결산 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조례 제4조의3 규정은 신규 제작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) ①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(이하 “계기”라고 한다.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	제4조의2(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) ①……제3조제1항……………
② 및 ③(생략)	② 및 ③(현행과 같음)
(신설)	④제3항에 의한 계기관리 책임자는 계기관리부서 소속공무원으로 하며, 소속부서장의 업무분장으로 감할 수 있다.
(신설)	제4조의3(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·규격 및 색채) 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증지의 종류는 10원

(신설)

제5조(증지의 종류, 규격 및 모양)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, 40원권, 50원권, 60원권, 200원권, 300원권, 400원권, 500원권, 700원권, 1,000원권, 5,000원권, 10,000원권으로 한다.

②(생략)

제7조(판매인 계약) ①증지는 시장, 구청장, 동장과 계약한 판매인(이하 “판매인”이라 한다.)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.

②~④(생략)

제9조(판매인 계약 신청) ①판매인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약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를 첨부 부천시 본청에 대한 판매인 계약은 시장에게 기타의 판매인 계약은 구

권, 50원권, 100원권, 300원권, 400원권, 500원권, 600원권, 700원권, 800원권, 1,000원권, 2,000원권, 3,000원권, 4,000원권, 5,000원권, 10,000원권, 50,000원권, 100,000원권의 17종으로 한다.

②계기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지 규격과 색채는 제1항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규격 : 가로 2.7센티미터

세로 3.0센티미터

2. 색채 : 연녹색

제4조의4(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) ①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(이하 “무인발급기”라 한다.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②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은 제5조에 의한 도안을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.

제5조(증지의 종류, 규격 및 모양) ①.....
.....10원권, 50원권, 100원권,.....
.....500원권, 600원권, 700원권,.....
.....

②(현행과 같음)

제7조(판매인 계약) ①.....시장.....
.....

②~④(현행과 같음)

제9조(판매인 계약 신청) ①.....
.....시장.....

된 증지는 "결손"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<u>첨부</u>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 [별지 제10호의2서식] <u>(신설)</u>	 <u>첨부</u> [별지 제10호의2서식] <u>일일민원처리내역</u>
---	--

(별지 제10호의2서식)

일일민원처리내역

						담당자	팀장(주무)	부서장	결 재	
년 월 일										
금액별 민원명			계	원	원	원	원	원	원	비고
총계 (A+B)	금 액									
	건 수									
서손 (A)	금 액									
	건 수									
소계 (B)	금 액									
	건 수									
주민 등록 등· 초본 발급	발급계 (a-b)	금 액								
		건 수								
	전산일일 집계(a)	금 액								
		건 수								
	전산오류 출력(b)	금 액								
		건 수								

주민등록열람	금 액								
	건 수								
주민등록증분실	금 액								
	건 수								
인 감 증 명	금 액								
	건 수								
F A X 민 원	금 액								
	건 수								
	금 액								
	건 수								
	금 액								
	건 수								
기 타	※ 정액단가 이외의 대형폐기물 신고 및 각종 인·허가 수수료 등은 전체건 수와 금액만 표지								